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98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정점식 · 강기윤

최형두 · 김태호 · 이종배

추경호 · 홍준표 · 박대수

이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.

그런데 청소년들의 성장 주기, 정신적 성숙기, 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 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 법률 제 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3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	제6조(실태조사) ①
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	
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	
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	
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<u>3년</u> 마	<u>2년</u>
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	
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	
공표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